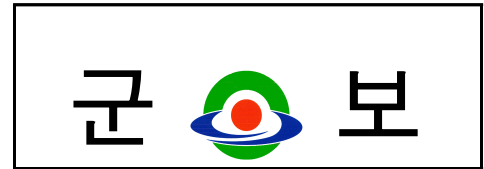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30호 2020. 4. 27.(월)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73호)

공 고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66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73호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

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계약사무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3조제5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제1관서 및 읍·면의 계약업무는 예천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예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관서 및 읍·면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 중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예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군의회	제1관서(읍면 제외)
회 계 책 임 관	기획감사실장	-	-
정 수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또는 세입업무담당
재 무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부군수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군수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실장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의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부서별 서무업무담당	-	서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 계 책 임 관	-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분 임 징 수 관	-	-	-
재 무 관	-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총 괄 부 채 관 리 관	-	-	-
부 채 관 리 관	-	-	-
총 괄 기 금 관 리 관	-	-	-
통 합 지 출 관	-	-	-
지 출 원	-	읍·면의 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 입 금 출 납 원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부면장 (예천읍은 재무업무담당)	-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서무업무담당,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출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서무업무담당,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부읍·면장	총무업무담당

- 비고 1. 0000담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읍·면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를 제외한 관서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7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금액제한 없음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경비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8. 기타 군에서 정한 경비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에 관한 사항	금액제한 없음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20. 1. 30.개정, 2020. 5. 1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예천군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재편

- 자치단체 공통규정은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 자치단체 규칙에는 훈령에서 위임한 10개 조문만 존치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계약사무 특례, 징수관·재무관의 직무위임, 재정사항의 합의 등 존치

다. 징수관, 재무관, 집행품의 전결 기준액 등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함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20. 1. 30.개정, 2020. 5. 1시행) 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일괄 개정·반영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상 해당 규칙 제명 인용 내용 변경

○ 현행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 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bj867s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4-650-68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예천군 건축 조례」의 개정)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영자

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03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로 한다.

제8조(「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개정)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0조(「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3조(「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예천군 건축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생 략)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 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 략) 2. 예치금은 「예천군 재무회 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제출 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 (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2개월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 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 ----- ----- ----- -----.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 3 3 조 (준 용)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현행	개정안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03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종량제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생략)	제11조의2(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① ----- ----- ----- ----- ----- ----- -----. 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 9 9 조 ----- -----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u>예천군 재무회계 규칙</u> 」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준용) ----- ----- ----- 「 <u>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및 「 <u>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제9조(「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6조(준용규정)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 <u>예천군 재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 ---- 「 <u>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및 「 <u>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제10조(「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예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

현행	개정안
	<u>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제13조(「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원인자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 <u>예천군 재무회계 규칙</u> 」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 ----- ----- ----- 「 <u>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및 「 <u>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제14조(「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 <u>예천군 재무회계 규칙</u> 」을 따른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및 「 <u>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제15조(「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 <u>예천군 재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 ----- ----- 「 <u>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u> 」 및 「 <u>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제16조(「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 <u>예천군 재무회계규칙</u> 」을 각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 ----- ----- 「 <u>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및 「 <u>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u> 」-----.

제17조(「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사용료) ① (생략)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u>예천군 재무회계규칙</u>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8조(「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현행	개정안
	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9조(「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 법」 및 「 <u>예천군 재무회계 규 칙</u> 」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 에 대하여는 「 <u>예천군 재무회 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준용) 온천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준용)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3조(「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현행	개정안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 <u>예천군 재무회계 규칙</u>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 <u>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